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방학교”를 “교육훈련기관”으로 법문 일원화 및교육대상 확대〉
■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15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소방학교”를 “교육훈련기관”으로 법문 일원화 및 교육대상을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대상자까지로 확대	2
2. 시·도지사가 소방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설치·운영 시 소방청장과의 사전 협의 의무 부과	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정현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5. 2. 25.
3. 회 부 일 : 2025. 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기관으로 소방학교를 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방청 직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와 시·도 소방본부 산하의 소방학교가 있음.

그러나 중앙소방학교와 시·도 소방본부 산하 소방학교는 ‘소방학교’라는 한정적 용어로 명시되어 교육훈련 대상·내용에 따른 명칭사용의 다양성·확장성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본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소방학교장 정원이 필요함.

따라서 교육훈련기관 설치 이전에 소방청과 사전에 개교 등을 협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Ⅲ. 검토의견

1. “소방학교”를 “교육훈련기관”으로 법문 일원화 및 교육대상을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대상자까지로 확대

개정안은 “소방학교” 용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변경하고 교육대상에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대상자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현행	개정안
제20조(교육훈련) ① 소방청장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하며, <u>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제20조(교육훈련) ① ----- ----- ----- ----- <u>소방공무원 및 관계</u> <u>법령에 의한 소방교육훈련을 위</u> <u>한 교육훈련기관을</u> -----.
② 시·도지사는 <u>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후단 신설></u>	② ----- <u>소방교육훈련</u> ----- ----- ----- <u>. 이</u> <u>경우 소방청과 사전 협의하여야</u> <u>한다.</u>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공무원법」은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시보 공무원 포함)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음(제50조제1항¹⁾).

이에 따라 현행법은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도록 하면서,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제20조제1항),

시·도지사도 하여금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0조제2항²⁾).

참고로, 2025년 4월 현재 소방교육은 소방청 소속의 중앙소방학교, 시·도 소속 8개 지방소방학교 및 시·도 소방본부의 하부조직인 소방교육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³⁾, 2024년도에 5만 2,010명을 대상으로 소방

1)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인재개발)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고 자기개발 학습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인재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4.>

③ 각 기관의 장과 관리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지속적인 인재개발을 통하여 소속 직원의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2.24.>

④ 교육훈련 실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소방공무원법」

제20조(교육훈련) ① 소방청장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소방교육대 개요

- 설치근거 :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소방학교는 독립된 행정기관인데 비해, 소방교육대는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된 교육훈련 담당 부서로, 해당 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방관련 전문교육 등을 운영함.

(자료: 소방청)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⁴⁾.

<2024년도 소방교육훈련 현황>

(단위: 명)

소 속	대 상	소재지	2024년 교육인원	교육대상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공주·천안시	4,457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민간인
시·도	서울소방학교	은평구	5,079	
	부산소방학교	북구	3,122	
	경기소방학교	용인시	8,872	
	인천소방학교	서구	1,752	
	광주소방학교	광산구	4,892	
	강원소방학교	태백시	3,905	
	충청소방학교	청양군	4,055	
	경북소방학교	안동시	4,496	
	대구소방교육대	동구	2,273	
	전남소방교육대	장흥군	2,331	
	경남소방교육대	의령군	3,613	
	제주소방교육대	제주시	3,163	
계			52,010	

개정안은 “소방학교” 용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변경하고, 교육훈련 기관의 교육 대상자에 ‘관계 법령에 의해 소방교육훈련을 받는 사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4) 최근 5년간 민간·공공기관 소방교육훈련 현황은 [참고 1] 참조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소방청장 소속	시·도지사 소속	소방청장 소속	시·도지사 소속
‘교육·훈련기관’ 법문 표현	소방학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기관	
교육대상	-소방공무원	-소속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대 상자	-소방교육훈련 대상자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용어 변경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같은 조문에서 교육훈련을 위한 기관을 뜻하는 용어로 “소방학교(제20조제1항)”와 “교육훈련기관(제20조제2항)”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안과 같이 “교육훈련기관”으로 일원화하는 경우 법문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교육훈련 대상·내용에 따른 명칭 사용의 다양성·확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임.

다음으로, 교육대상자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방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에서 소방 및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소방 교육·훈련이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⁵⁾,

5) 예를 들면,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등은 자체소방대의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고(제20

현재도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민간과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⁶⁾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설립·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대상자에 소방공무원 외에 ‘관계 법령에 의한 소방교육훈련 대상자’도 포함하는 경우, 소방공무원 이외의 교육대상자가 소방학교(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보다 적극적으로 소방 관련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소방 관계 법령에 따른 연간 교육대상 추계>

구 분	대 상	개 소	인 원	비 고
법령에 따른 교육대상	자체소방대 ⁷⁾	320개소	8,425명	
	재난업무종사자 ⁸⁾	1,382개소	3,171명	
	총괄재난관리자 ⁹⁾	501개소	374명	
	의용소방대원 ¹⁰⁾	4,040개대	98,301명	
	계	5,943개소	110,271명	
< 그 외 교육수요 > - 공항소방대 : 9개소 544명, 특정소방대상물별 자위소방대 : 401,951개소, - 軍 소방대 등(육군·해군·공군), 학교 교직원 대상 안전관리 위탁교육 등				

(자료: 소방청)

조의2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55조제3항 및 제4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 법령은 소방청장이 총괄재난관리자에게 재난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소방관계 법령에 따른 민간·공공기관 교육훈련대상 및 관련 조문은 [참고 1] 참조

6) - 최근 5년간 소방학교에서는 소방공무원 외에 약 47,000여명의 사람이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남.

- 상세 내용은 [참고 2] 참조

7) 다량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소에 두는 민간소방대(소방차 포함)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청은 이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중앙·지방소방학교)의 민간과 공공부분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을 개정하고(2023. 3.) 중앙소방학교의 기능을 개편하여 민·관 교육훈련 전담체제를 갖추고 중앙·지방소방학교 간 역할분담을 정리하여 민·관 교육훈련 수용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¹¹⁾.

제19조(자체소방대)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긴급구조업무 종사자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③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의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9) 초고층건축물(50층, 높이200m 이상)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13.>

7. “총괄재난관리자”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0) 재난현장에서 화재·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및 훈련)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4. 18.,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1) 소방청은 2023년 3월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전부개정(대통령령 제33360호, 2023. 3. 31. 시행)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과정 및 교육훈련용 시설을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개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음.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교육훈련기관 간 협업·개방) ① 소방청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업·개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시·도지사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

1.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전체 소방공무원에게 개방
2. 교육훈련기관별로 특성화된 전문교육훈련과정 지정
3. 교과목, 교재, 교육훈련용 콘텐츠 등 교육훈련과정의 공동 개발·활용
4. 교수요원, 교육훈련 시설 및 기자재 등의 상호 활용
5.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및 교육훈련용 시설을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개방
6. 그 밖에 각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사항의 상호 지원

참고로, 경찰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법」의 교육훈련 규정(제22조)¹²⁾에서 특정 학교가 아니라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실제 교육기관 명칭을 중앙경찰학교,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구원 등 교육훈련 대상이나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음¹³⁾.

다만, 개정안을 입법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개정안의 취지가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법문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소방청장에게 “소방공무원 및 관계 법령에 의한 소방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소방청장이 설치하는 교육훈련기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시·도지사는 “소방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소방교육훈련의 대상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고 있음.

현재 시도 소속 소방 교육훈련기관이 각각 특화된 교육을 전국 소방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2) 「경찰공무원법」

제22조(교육훈련)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사용명칭 현황은 [참고 3] 참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¹⁴⁾과 개정안의 취지가 교육대상을 소방공무원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대상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러한 의미가 보다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법문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소방학교”와 “교육훈련기관”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 법률의 정합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에 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상자도 포함할 경우 소방 관련 교육훈련을 민·관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4) 소방청은 지역별 재난대응 여건 등을 고려해서 교육기관 별로 특성화 교육을 지정하였고, 타 시도 소방공무원도 지방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함.
- 2025년 교육계획 : 9개 기관 22개 과정 66회 1,444명,
- 세부내역은 [참고 4] 참조

2. 시·도지사가 소방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설치·운영 시 소방청장과의 사전 협의 의무 부과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소방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방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교육훈련)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u>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후단 신설></u> ③·④ (생략)	제20조(교육훈련) ① (생략) ② ----- <u>소방교육훈련</u> ----- ----- ----- <u>이 경우 소방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u> ③·④ (현행과 같음)

소방공무원 정원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와 관련한 현행 법령의 체계를 살펴보면,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고¹⁵⁾,

15)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소방청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방준감의 정원은 7명을, 소방청의 정원은 18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음¹⁶⁾.

한편, 시·도에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그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시·도에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되(영 제1조의2 본문),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하는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을 확보하여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영 제1조의2 단서)¹⁷⁾.

이와 같이 대통령령에서 지방소방기관의 설치와 그 설치를 위한 사전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소방청의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은 17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④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6급 4명)은 산림청, 4명(경정 4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16)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3.>

② 시·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17)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행정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지방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협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이 영에 따라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려면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하는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을 확보하여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협의를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교육훈련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제121조)과의 체계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임¹⁸⁾.

참고로, 교육훈련과 관련한 기관 간의 협의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국가공무원 교육훈련 및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 정책 등을 담고 있는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인사혁신처장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관장하고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두도록 하면서(법 제4조),

동 법 시행령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경우 필요성과 교육훈련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시행령 제5조의2)¹⁹⁾.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소방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방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18) 「지방자치법」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19)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등) ① 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2(전문교육훈련기관의 설치 절차)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훈련기관(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 설치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설치 필요성, 교육훈련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데, 이는 시·도에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방청과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행 법률 및 하위 법령의 규정 체계가 공무원의 정원 및 기관 설치를 위한 사전 협의 관련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현재 시·도에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이 제정·시행 중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에도 소방청장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소방청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종합적인 교육훈련 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51

참고 1

소방공무원 외의 소방교육 대상

※ 자료: 소방청

□ 법정 대상

근거법령	대 상	인 원	비 고
소방기본법 (\$20의2③) 위험물안전관리법 (\$19)	자체소방대	320개소 8,425명	-
재난안전법(\$55③)	재난관리업무종사자 (긴급구조지원기관 관리자, 담당자)	1,382개소 3,171명	신규교육(지정 1년 內) 정기교육(2년마다 1회)
초고층재난관리법(\$ 12④)	총괄재난관리자	501개소 374명	신규교육(지정 6월 內) 보수교육(2년마다 1회)
의용소방대법(\$13)	의용소방대	4,040개대 98,301명	신규교육(지정 2년 內) 전문교육(年 12시간)

□ 그 외 교육훈련 수요

근거법령	대 상	인 원	비 고
화재예방법 (\$24⑤)	자위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가 관계인으로 구성)	401,951개소	-
공항안전운영 기준(\$136) (국토교통부 고시)	공항소방대	9개소 544명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전국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관계인	전국 13개소 안전강사	중앙소방학교에서 안전교육 강사 양성
	외국인 근로자	약 76,000명	시도에서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실시
학교안전법(\$8)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교육청 위탁 인원	교육청→소방학교 요청
재난안전법 시행령(\$4)	탐색구조부대	17개대	-
	재난신속대응부대	7개대	-
육군·해군·공군	軍 소방대 등	-	-

[관련 법령 조문]

「소방기본법」

제20조의2(자체소방대의 설치·운영 등) ① 관계인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구급 활동을 하기 위하여 상설 조직체(「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체소방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체소방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자체소방대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경우 소방대장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한다.
-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자체소방대의 교육·훈련 등의 지원)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체소방대(이하 “자체소방대”라 한다)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자체소방대 교육훈련과정
2. 자체소방대에서 수립하는 교육·훈련 계획의 지도·자문
3.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방기관”이라 한다)과 자체소방대와의 합동 소방훈련
4. 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소방대의 현장실습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교육훈련기관 간 협업·개방) ① 소방청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업·개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시·도지사나 먼저 협의해야 한다.

1.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전체 소방공무원에게 개방

2. 교육훈련기관별로 특성화된 전문교육훈련과정 지정
3. 교과목, 교재, 교육훈련용 콘텐츠 등 교육훈련과정의 공동 개발·활용
4. 교수요원, 교육훈련 시설 및 기자재 등의 상호 활용
5.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및 교육훈련용 시설을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개방
6. 그 밖에 각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사항의 상호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③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의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교육: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받는 긴급구조교육
2. 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는 긴급구조교육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① 총괄재난관리자는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補修教育)을 받아야 한다.

1. 재난관리 일반, 2. 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
3.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피난안전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8.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거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그 내용(변경되는 고시 내용을 포함한다)을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제2조(교육기관의 지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중앙소방학교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참고 2

최근 5년간 민간·공공기관 소방교육훈련 현황

※ 자료: 소방청

□ 연도별 현황

연도	과정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年 인원*	비고
2020	29	87	3,453	6,364	· 코로나19로 교육인원 감소
2021	34	67	2,376	6,078	
2022	48	118	3,802	7,646	· '22년부터 다시 증가추세
2023	72	217	6,595	11,927	
2024	91	349	7,790	15,053	
계	274	838	24,016	47,068	

* 연인원 : 교육인원 × 교육일수

□ 교육 대상별 현황

교육대상	교육횟수	교육인원	年 인원	비고
자체소방대 등	245	6,793	19,087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197	2,151	5,416	
총괄재난관리자	6	124	139	
의용소방대	202	9,073	11,101	
학교 교직원 등	64	2,392	3,643	
기 타	124	3,483	7,682	
계	838	24,016	47,068	

참고 3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사용명칭 비교

※ 자료: 소방청

□ 소방·경찰의 교육훈련 대상, 내용에 따른 교육기관 명칭 사용 비교

소 방	경 찰
소방공무원법 제20조(교육훈련) ① 소방청장은 ~ (중략)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 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법 제22조(교육훈련)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중앙소방학교 • 신임교육(간부후보생, 신규임용자) • 관리역량교육(소방경·소방령·소방정) • 전문교육 • 민·관교육	① 중앙경찰학교 • 신임교육(신규임용자)
② 시·도 소방학교(8개) • 전문교육 • 신임교육 • 민·관교육	② 경찰인재개발원 • 기본교육(경감·경정) • 전문교육
※ 시·도 소방본부 교육대(4개) • 전문교육	③ 경찰대학 • 신임교육(경위) • 기본교육(변호사 경채, 총경)
	④ 경찰수사연수원 • 수사분야 전문교육
	※ 지방청 교육훈련센터(17개) • 전문교육, 직장교육

□ 「공무원 인재개발법」과 중앙부처 교육훈련기관 사용 명칭 비교

구분	교육훈련기관 근거규정	실제 사용명칭
공 무 원 인재개발법 (제 3 조) (제 4 조)	•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 재개발원 을 두고 _(후략) •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전문교육훈련기관 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국가민방위재난안전 교육원 국립 외교원 농촌 인적자원개발센터

□ 「지방공무원 인재개발법」과 지자체 교육훈련기관 사용 명칭 비교

구분	교육훈련기관 근거규정	실제 사용명칭
지 방 공 무 원 법 (제 7 5 조)	•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훈련기관 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00 시인재개발원 , 00 도공무원교육원 , 00 도자치연수원

참고 4

2025년 특성화 교육 운영 현황

※ 자료: 소방청

○ **(특성화교육)** 중앙·지방소방학교 22개 과정 66회 1,444명

교육기관	과정/인원	세부내역
중앙소방학교	5과정 566명	· 화재조사전문과정 70명 · 감염병대응과정 60명 · 현장지휘관양성과정 156명 · 교육훈련 교관양성과정 80명 · 소방드론과정 200명
서울소방학교	4과정 400명	· 지하철재난대응과정 30명 · 도시탐색구조과정 30명 · 현장외상소생술과정 30명 · 현장지휘관양성과정 310명
부산소방학교	3과정 85명	해난구조구급과정 15명 수난구조사과정 20명 해상생환과정 50명
인천소방학교	1과정 30명	항공기사고대응과정 30명
광주소방학교	1과정 60명	다수사상자 대응관리과정 60명
경기소방학교	2과정 130명	화재진압교관과정 60명 도시탐색구조과정 70명
강원소방학교	2과정 58명	산림화재대응과정 30명 특수구조과정 28명
충청소방학교	2과정 65명	항공구조과정 25명 소방드론과정 40명
경북소방학교	2과정 50명	산림화재대응과정 30명 소방관생존구출과정 20명